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준비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염승훈 수석연구원





Contents

- l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l 2023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 Ⅳ 회사소개 및 솔루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약 800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조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2023년까지 시행



제재 조치 없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약 1,600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광역 및 기조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024년부터 시행 (2024,03,15)



과태료 부과 (자료 미제출·부실 제출)

절차

5~6월

진단 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편람 배포)

- □ 10월~11월기관별 진단 수행증빙자료 온라인 등록
- 1월~3월 서면진단 및 검증 현장 방문
- 4월최종 결과 확정
- 5월

 발표(보도자료)









약 800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조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약 1,600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공기업,지방공사·공단 등)



기관 차원의 관심도 노력도 평가 확대



전문가 현장검증

표창 및 포상금(우수기관, 소속 직원) 개선 권고 실태점검 시행



평가 자료 부실·미제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2023년 3월 14일 신설 2024년 3월 15일 시행

-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 호 정책 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

Q 정량 53개

- ✓ 개인정보 관리체계
- 정보주체 권리보장
- **기인정보 침해방지**
- ✓ 감점

15점

15점

30점

유출사고

-10점(건당)

행정처분

-3점(건당)

기타 개인정보 사고

-10점

Q 정성 7개

-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 ③ 개인정보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및 개선 노력
- 4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 5 기타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적절성 및 유출·침해 대응계획
- 6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 노력
- 7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Ⅱ . 2023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예산 인정 기준

정량-2: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가?

세부항목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임직원 및 수탁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임직원·수탁자 및 고객(민원인) 대상 캠페인(이벤트)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②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컨설팅 수행
	소속·산하기관, 수탁업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 등 수행
	개인정보보호 정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시스템보안) 서버보안(Secure OS), 서버접근제어시스템, 서버백신, 보안취약점 점검도구 등
	(DB/데이터 보안) DB접근제어 시스템, DB암호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가명처리) 솔루션, 데이터완전삭제 솔루션 등
③ 개인정보보호	(웹보안) 웹방화벽(WAF), 웹쉘탐지 솔루션, 웹취약점 점검도구 등
시스템·솔루션	(PC/단말보안) PC보안, 백신소프트웨어,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패치관리시스템 등
M=0 E+0	(인증)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일회용비밀번호(OTP), 싱글사인온(SSO), 생체인식시스템, 통합권한관리(EAM), 통합계정관리 (IM/IAM) 등
	(유·노출 방지) 개인정보 검색도구, 개인정보 필터링, 데이터 유출방지 솔루션(DLP), 보안USB, 문서보안(DRM), 외부전송 모니터링 시스템, 출력물보안솔루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모니터링 솔루션 등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등 전문위원회 운영
④ 기타	웹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자문 등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시스템별 책임자, 운영기관, 수탁기관 등 기관별·분야별·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설치· 운영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접속기록 보관·관리

정량-29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단,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함

대상기간 : (최근 1년간) 2023.1월~2023.12월(제출 시점에 맞추어서 제출)

✓ 단, ①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②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함

대상기간: (최근 2년간) 2022.1월~2023.12월(제출 시점에 맞추어서 제출)

접속기록 관리방법 예시

- 응용시스템에서 각 화면별로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프로그램 로직 구현
-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도입
- DB에 대한 접속기록의 경우 DB자체 로그기록 설정 또는 DB접근제어솔루션 도입 등
- ※ 유의사항: 평가대상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이 1년(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행'으로 평가 (단, 신규구축 시스템의 경우에는 구축 시점부터 접속기록을 보관·관리시 인정)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접속기록 필수사항

정량-30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접속기록에 계 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다음의 필수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기록·관리해야 함

접속기록 필수사항

- ✓ (계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정보
-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 ▼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생성
 - ·연계·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정기적 점검

정량-31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또한, 접속기록 점검 시 다음과 같은 '비정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 소명요청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해야 함

접속기록 비정상 행위 예시

- (계정)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계정으로 접속한 행위 등
- ・ (접속일시)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접속한 행위
- (접속지 정보)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 또는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특정 정보주체에 대해 과도하게 조회, 다운로드 등의 행위(수행업무)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의 행위 등
- (기타) 짧은 시간에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다운로드 사유 확인

정량-3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시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견되는 경우,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있는가?



✓ 내부 관리계획 상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확인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견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함

* '⑦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여 정함



 또한, 다운로드 사유 확인 시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유의사항: 평가대상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이 1년(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행'으로 평가 (단, 신규구축 시스템의 경우에는 구축 시점부터 접속기록을 보관·관리시 인정)



다운로드 사유확인 기준 예시

- · (정보주체 수)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일평균 20건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100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 · (다운로드 횟수)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행위
- (다운로드 시간)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접속기록 보관

정량-33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접속기록 보관방법 예시

- ・ 상시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 별도의 보조저장 매체·저장장치에 보관
- ・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D-ROM, DVD-R, WORM(Write Once Read Many)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 사용
-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정보를 별도 보관·관리 등
- ※ 접속기록을 HDD에 보관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MAC값, 전자서명값 등)는 별도의 HDD 또는 관리대장에 보관 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정량-51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고,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분리하고 있는가?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하거나,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추가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함



 또한,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하는 경우 추가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 통제해야 함

※ 유의사항: 평가대상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이 1년(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행'으로 평가 (단, 신규구축 시스템의 경우에는 구축 시점부터 접속기록을 보관·관리시 인정)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가명정보 처리 기록·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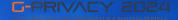
정량-52 : 가명정보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목적 등 필수사항을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내역 관리를 위해 다음의 필수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함

가명정보 처리기록 필수사항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2) G 凲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예산 투자 및 노력도

정성-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보호 예산이란?

기관(소속기관·소속행정기관 포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컨설팅, 시스템·솔루션 도입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임직원 및 수탁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임직원·수탁자 및 고객(민원인) 대상 캠페인(이벤트)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컨설팅 수행 개인정보보호 정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솔루션	 (시스템보안) 서버보안(Secure OS), 서버접근제어시스템, 서버백신, 보안취약점 점검도구등 (DB/데이터 보안) DB접근제어 시스템, DB암호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가명처리) 솔루션, 데이터완전삭제 솔루션 등 (웹보안) 웹방화벽(WAF), 웹쉘탐지 솔루션, 웹취약점 점검도구등 (PC/단말보안) PC보안, 백신소프트웨어, EDR(Endpoint Detection & Prevention), 패치관리시스템 등 (인증) 패스워드관리시스템, 일회용비밀번호(OTP), 싱글사인온(SSO),생체인식시스템, 통합권한관리(EAM), 통합계정관리(IM/IAM) 등 (유·노출방지) 개인정보 검색도구, 개인정보 필터링, 데이터 유출방지솔루션(DLP), 보안USB, 문서보안(DRM), 외부전송 모니터링시스템, 출력물보안솔루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모니터링 솔루션 등
기타	・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등 전문위원회 운영 ・ 웹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자문 등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안전조치 및 개선 노력

정성-3 :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1.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계획 수립 (정성 30%)



(PLAN)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계획(현황·문제점, 개선과제 등)의 적절성

- ※ 내·외부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계획 수립
- ※ 침해이슈 사전 차단 및 차세대 시스템 선제적 도입 등 개선계획에 대한 상세한 추진 프로세스 구성

게인정보 안전조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관리(고시 제5조)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통제'(고시 제6조)
-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고시 제10조)
- 물리적 안전조치(고시 제11조)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고시 제12조)
- 개인정보의 파기(고시 제13조) 등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안전조치 및 개선 노력

정성-3: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 2.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계획 수립 (정성 30%)
 - (DO)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 추진과정의 충실성 및 적절성
- 3.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성과 (정성 40%)
 - ✓ (CHECK)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계획 대비 개선실적의 적절성 및 우수성
 - ※ 내·외부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계획 수립
 - (ACT)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성과 분석 및 향후계획의 적절성
 - ※ 개선사항 외에 고도화가 필요한 내용 및 추가적인 문제점 파악





업무절차연계도

분야	진단지표	진단항목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수행	・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주도 실적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변경 내용을 지속적 이력 관리 여부 👉 🕑 관리대성	년 당(홈페이지)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 이행 여부	업무절차 연계도	
개인정보 침해대책	개인정보침해사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여부		
	개인정보	방지조치	• 업무용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여부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이행 여부 이행점검	1	
	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 여부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3.09.22)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 1.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 ✓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 ▼ 3.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

접속기록 필수항목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생성・연계・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 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등)

※ 접속기록 예시

번호	접속일	접속시간	계정(ID)	접속지정보(IP)	수행업무(이벤트)	정보주체 정보
1	2024-03-02	10:15:20	gdhong01	192.168.4.123	고객정보 조회	882428-222222
2	2024-03-02	10:16:05	gjlim02	192.168.4.17	고객정보 수정	971325-1111111
3	2024-03-02	11:15:47	jskim01	192.168.4.34	직원 조회	844505-1111111





개인정보 다운로드의 기록관리 및 사유 확인



게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해설서)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윌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을 목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 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다운로드의 기록관리 및 사유 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해설서)



△ 다운로드 사유확인이 필요한 기준 책정 예시

- ▼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수 :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일평균 20건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 ▼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 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행위에 대한 사유 확인
- ▼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다운로드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개인정보를 엑셀, 워드, 텍스트, 이미지 등의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D-PRIVACY 202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다운로드 유형





IV . 회사소개 및 솔루션

G-PRIVACY 2024

이지서티 회사 소개

	일반 현황
기업명	주식회사 이지서티
영 문 명	EASYCERTI Inc.
대표자	심기창
설립연도	2002년
임직원 수	93명
사업분야	개인정보 접근 이력 및 상시 모니터링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및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시스템 개인정보 노출점검 개인정보 필터링 웹 방화벽 시스템





검증된 원천기술 보유

- 정보보호 특허인증 보유 (24종)
- 국가 연구과제 수행 (6건)
- 신기술 /우수 IT제품 최우수상

국가정보보호 인증 솔루션 보유

- 개인정보보호제품 CC인증 (5건)
- 개인정보보호제품 GS인증 (15건)

조달등록 제품 보유

- 조달등록 제품 (3종)
-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3종)
- 혁신제품 등록 제품 (2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05-11-24)



ISO-9001 인증 ('13-03-25)



ISO-27001 인증 ('13-06-19)



일자리창출우수기업 ('13-11-28)



INNO-BIZ 인증 ('15-10-22)



우수벤처기업 ('16-06-01)



가족친화인증기업 ('16-12-01)



Hi-Seoul 브랜드기업 ('17-02-22)





지능형 소명 ·관제 시스템





지능형 소명 관제 시스템

- 개인정보접속기록 현황모니터링기능제공
- 비정상행위 기간별 추이분석 및 현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개인별 비정상행위 위험도 파악 기능 제공
- 오·남용 의심 행위자 현황 파악 기능 제공
- 비정상행위 시나리오 추출조건 관리 기능 제공

소명 요청

판정 현황

- 소명 프로세스 전반의 자동화 지원
- 다양한 업무 환경의 소명 처리 지원
- 감사이력 조회 기능 제공
- 탐지 위험행위 예·경보기능 제공



소명 요청

개인정보 접속기록 이력 중 비정상위협 유형에 해당하는 건을 탐지, 대상자에게 소명요청 알림



稟

소명 요청 및 판정 현황

소명 요청건, 응답건, 판정건에 관한 통계를 한 눈에 그래프, 수치로 파악 가능



소명 판정

판정자가 사유 소명 확인. 적정, 부적정 혹은 추가소명 판정 진행, 결과 통지 알림



보고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 위한 보고서 생성



C-PRIVACY 2024

지능형 소명 -관제 시스템 구성

(주)이지서티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UBI SAFER-PSM」 사용시





개인정보 접속기록 및 다운로드 관리 솔루션 – PSM



UBI SAFER-PSM

국내 시장 점유율 최다 GS인증 획득!

우수조달등록제품!















- 광역·기초자치단체 개인정보취급자들의 개인정보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 내역을 자동 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이력 및 접속기록 보관.관리
-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른 정책설정 및 접근통제 가능
- 개인정보취급자별 개인정보 처리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개인정보취급자 및 담당자, CPO 등에게 일원화된 개인정보 관리 보고체계 마련



U-PRIVACY SAFER 개인정보 다운로드 기록 관리

업데이트 이력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v4.0 •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 모듈 연계모델 개발

- GS인증 1등급 v3.0
 - CC인증 EAL3
 - ・ V&V 성능평가 완료
 - 나라장터 우수조달 제품등
- v2.0 · GS인증 획득
 - CC인증 획득 (제품 최초)



제품인증 및 관련특허 정보

업데이트 이력 GS인증 획득 이미지 파일 필터링 제공 v4.0 • 대용량 처리 • GS인증 획득 · CC인증 EAL3 획득 조달 우수제품 등록 v3.0 불건전 게시물 및 유해성 공격정보의 실시간 차단 클라우드 환경 지원 v2.5 · SW 저작권 등록 · CC/GS 인증 획득 v2.0 • 개인정보 연관 데이터 진단 및 필터링 기능



비식별 처리 솔루션 - IDS

IDENTITY SHIELD

주요특징



지능형 자동 가명 결합 솔루션

국내최초 가명 익명 처리 시스템

국내 최초의 개인정보 가명·익명 처리 시스템 으로서, 국내 개인정보 가명·익명 처리 시장의 개척자입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위**

10여곳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지정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는 점유율 70% 1위 입니다. 조달청 동종제품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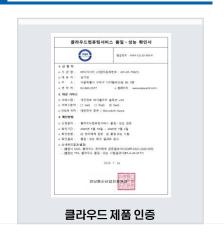
최근 3년간 총액 계약 및 납품 요구 건수 300건이상 으로 조달청 동종 제품 부문 점유율 1위 입니다. **국내최다** 레퍼런스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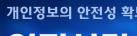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관세청, 소방청,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권익 위원회 등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최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클라우드 품질 및 성능 인증

- 조달우수제품, 혁신제품 지정
-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 국내 최초, 최다 프라이버시 모델을 적용한 가명·익명 처리 레퍼런스 확보
- 고속분산 가명 처리(Parallel Deidentification)로 2,500억 건의 데이터 가명 처리
- 기존 정형데이터에서만 가능했던 개인정보 탐지 기술적용 범위를 비정형데이터까지 확장하여 가명처리 기능 제공
- V&V 성능평가 공신력 있는 품질과 성능 검증 완료. IR52 장영실상 수상(고속분산비식별화솔루션)
- 클라우드 성능평가 품질 성능 인증 취득 /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구축 및 사용 가능





이지서티 솔루션 사용 고객사





감사합니다

[Contact us] Mail: sales@easycerti.com Tel: 02-865-5577

서울본사 061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77 (역삼동, 조선내화B/D) 5층, 6층 tel: 02-865-5577

부산지사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벽산e센텀클래스원 1020호) tel: 070-7784-4007

광주지사 614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2 남선빌딩, 205호 tel: 062-385-4007

